무역상무연구
제67권
2015. 8, pp. 163~186.

논문접수일 2015. 06. 23.
심사완료일 2015. 06. 27.
게재확정일 2015. 08. 20.

국내기업의 FTA 활용에 따른 원산지 관리비용 분석*

조 미 진** · 이 병 문*** · 송 경 은****

Ⅰ. 서 론
Ⅱ. FTA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의 범위와 관련연구 검토
Ⅲ. 국내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비용 분석
Ⅳ. 결 론

주제어 : FTA, 원산지규정, 원산지 관리비용, 국내기업의 FTA 활용, 무역비용

Ⅰ. 서 론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한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기준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와 체결한 총 11개의 FTA가 발효 중에 있다. 최근 양자간 FTA를 통한 상대국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극적인 FTA

- 본 연구는 송경은 외(2013)에 기초하여 논문의 형태로 재작성 하였으며 분석 및 시사점 부분을 보강하였음을 밝힌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5150).

**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주저자), E-Mail : mjcho@mju.ac.kr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 bmlee@ssu.ac.kr
****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공동저자), E-Mail : skyeun@gmail.com

추진은 자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다국적 생산 활동의 보편화 현상이 연계되면서 FTA에서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원산지규정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법규, 법령 및 규칙으로 정의된다. 원산지규정은 FTA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신청함에 있어 제3국 기업에 의한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반면, 각 FTA별로 원산지규정의 일관성이 부족해지면서 원산지규정의 잠재적 무역왜곡 가능성과 숨겨진 무역장벽(hidden protection)[1]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rishna and Krueger(1995)에서는 원산지규정을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 특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중간재 조달 및 생산 방식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존재하고, 이에 더 나아가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질수록 비효율적인 역내산 중간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FTA별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부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기업들이 다수의 FTA 대상국에 수출하는 경우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각 FTA별로 다르게 규정된 증명 및 통관 절차 등으로 인해 FTA 이행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유발되며, 기업 차원의 FTA 활용에 따른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이 더욱 소모되어 FTA 본연의 기대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 활용 관련 기업 차원에서 지불해야 하는 무역비용(trade costs)을 국내 기업의 FTA 활용단계에 따라 활용이전단계, 활용단계, 활용이후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원산지 관련 관리비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듯 본 논문은 FTA의 활용에 있어 기업에게 실제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봄으로써 기업의 FTA 활용 관련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정책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일조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 Krueger(1993)는 원산지규정의 숨겨진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에 처음 주목하였는데, NAFTA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기업이 NA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산 중간재를 사용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산지규정 적용에 따른 미국의 중간재 산업이 보호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Ⅱ. FTA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의 범위와 관련연구 검토

1. 선행연구검토

FTA에 규정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이를 충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통상 준수비용(compliance costs)라 하는데, 이는 수입자,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협정문에 명시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간재 조달이나 생산방식을 변경할 때 소용되는 비용과 관련 시스템 운용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산지규정이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보고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이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2)]

한편 Estevadeordal(2000) 이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산지규정이 유발하는 비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는데 Carrere and de Melo(2004), Anson et al.(2005), Cadot et al.(2006)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Estevadeordal(2000)이 고안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기초하여, 원산지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될수록 기업들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하기 보다는 MFN 관세율 사용을 선택함에 따라 FTA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에 주목하여 품목에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3)]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Cadot et al.(2006)은 미주지역의 NAFTA와 EU의 Pan European 시스템의 준수비용을 추정하여 각각 6.8%와 8%의 값을 얻었다.[4)] 이중 NAFTA의 경우 약 1.9%, EU의 Pan European 시스템의 경우 약 6.8%가 행정비용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Pan European 시스템의 원산지 확인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평가와 일치한다. 또한 Anson et al.(2005)에서도 NAFTA 원산지규정의 비용을 약 6%대로 추정한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Carrere and de Melo(2004)에서는 NA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세부 내용이 원산지 관련 비용을

---

2) Krishna and Krueger(1995), Falvey and Reed(1998), Rosellon(2000), Ju and Krishna(2005)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원산지규정 충족에 따르는 비용 보다 FTA 특혜관세 신청에 따른 이득이 클 경우 FTA 특혜관세 혜택을 신청하게 되는 만큼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용 추정시 '기회비용' 측면에서 FTA 특혜신청에 따른 이득(MFN 세율과 특혜세율의 차이)에 주목한다.

4) NAFTA의 경우 2001년 교역데이터, PANEURO의 경우 2002년 교역데이터가 이용되었다.

다르게 유발시키는 점을 보였는데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하는데 유발되는 원산지 관련 비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의 순으로 분석됨을 보였다.

이들 연구에 앞서 Homles and Shephard(1983), Koskinen(1983)의 경우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에 대한 간접적인 추정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Homles and Shepard(1983)의 경우 EC내 무역 거래에서 360쪽에 달하는 35개의 서류가 요구되고 있음을 조사하였고, Koskinen(1983)은 EFTA 국가를 대상으로 1982년 기준 수입가치의 약 1.4～5.7% 가량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2. 원산지관리비용

상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FTA에 포함된 원산지규정에서 유발되는 비용이 존재하고, 이러한 비용이 기업들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국내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련 비용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실제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원산지 비용을 추정하는 연구는 FTA의 경제적 성과 및 이행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 수단임을 인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으나, 여기에서는 보다 미시적으로 FTA를 실제 활용하는 기업 차원에서 FTA 이행과정에서 유발되는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을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 원산지관리 비용을 크게 FTA 활용이전단계, 활용단계, 활용이후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는 다시 사전정보 및 인프라 구축비용, 원산지 관리에 관한 이행비용,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후관리비용으로 나누어 구체화해볼 수 있다.

첫째, 사전정보 및 인프라 구축비용은 기업이 FTA 원산지를 활용하기 이전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활용코자 하는 FTA 관련 정보의 획득과 FTA 원산지 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인적, 물적, 시스템적인 인프라 구축비용을 말한다.

둘째, 원산지 관리에 관한 이행비용은 기업이 FTA 원산지의 활용단계에서 직접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부담의 정도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른 업무의 복잡성 등이 원산지관리를 위한 이행비용 측정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후관리비용은 FTA 활용이후 단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부대 서류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이러

한 비용은 사실상 원산지증명서(확인서)의 작성을 위해 보관 내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또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대비한 목적이 주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FTA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설문을 함께 하였는데,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FTA의 특혜관세 효과를 보기 위해 원산지 관리를 위해 투입된 비용 대비 수출을 통한 혜택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Ⅲ. 국내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비용 분석

1. 설문조사개요

1) 조사대상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대상은 FTA를 활용하는 국내기업으로 이는 직접적으로는 생산과 수출을 하는 업체이며, 넓게는 수출업체에 납품을 하는 생산업체로 한정하되 간접적으로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업체도 포함한다. 이러한 조사대상을 구체화 하면 FTA 이행 방식과 의무에 따라 인증수출자, 한-미 FTA 활용 수출기업, 원산지관리사 교육 이수자, FTA-PASS 활용 기업, 기타 수출기업 및 세관 컨설팅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2) 조사방법 및 표본설계

조사 방법은 FTA 활용 기업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 및 직접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통해 설문 응답을 받았다. 설문 기간은 2013년 9~10월 동안 실시되었고, 설문에 응답한 업체는 464개이다.[5)]

조사 내용은 크게 11부문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체 일반현황, ② FTA 원산지 관리 관련 기본 정보, ③ FTA 원산지 관리 인프라, ④ FTA 원산지 관련 업무 부담, ⑤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비용, ⑥ FTA 원산지 정보 관리 비용, ⑦ 원산지 관리 교육 및 컨설팅 수진 비용, ⑧ 인증수출자, 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에 따른 혼잡성/비용, ⑩ FTA 비용/편익.

---

5) 「중소기업관련통계」(중소기업청, 2010년 기준)에 기초한 약 3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되었다.

3) 응답업체 특징 및 실태

설문에 응답한 업체(464개 기업 대상)의 일반적인 특징과 그 실태는 종업원수와 매출액 현황 및 생산/수출/수입 기업 여부 및 이들 업체가 주로 어떤 FTA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규정되는데, 중소기업은 주로 상시근로자수 300인, 소기업은 50인 미만으로 구분한다. 아래 그림에 정리된 것과 같이 본 설문에 응답한 업체의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을 통해 보면 300억 미만이 전체 약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형 규모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답기업의 90%가 수출기업이고, 생산기업(74.4%), 수입기업(48.4%) 순이며, 이들 기업이 활용하는 FTA로는 한-EU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377개(8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미 FTA(245개, 53.6%), 한-ASEAN FTA(237개, 51.9%) 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1> 응답기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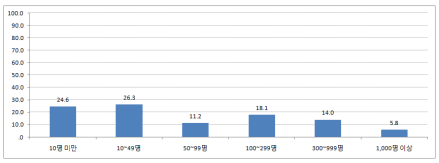

<종업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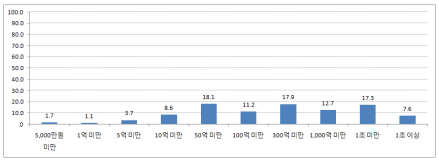

<매출액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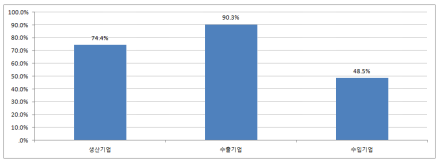

<생산/수입/수출 기업 여부(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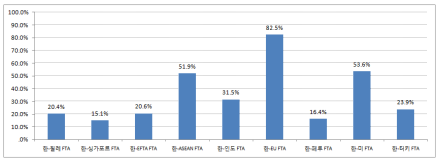

<FTA 활용 구분(복수응답)>

자료: 저자 작성

2. 국내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및 분석

1) 사전 정보 및 인프라 구축 비용

(1) 의의

사전정보 및 인프라 구축비용에는 FTA 원산지의 활용이전에 관련 정보의 획득과 FTA 원산지 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인적, 물적, 시스템적인 인프라 구축비용이 포함된다. 이는 크게 원산지 관리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원산지 관리 시스템 비용, 원산지 관리 조직 인프라 비용, 인증수출자 취득 관련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FTA 원산지 관련 기본 정보(회사의 활용 FTA 협정(국가), 특혜 수출품목 및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원산지 검증 등)에 관한 기업의 인지도 조사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그러함' 이상)이 각각 80.8%, 66.4%, 76.1%, 6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 기업 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응답이 89.7%를 차지함으로,[6] 이는 조사대상 기업이 FTA 활용을 위한 사전 탐색에 대해 이미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원산지 관리 교육 및 컨설팅

먼저 FTA 활용 수출 및 원산지 관리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대상 기업의 90%가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집단이 주로 'FTA 활용 기업'으로 인증수출자라고 응답한 비중이 94.6%에 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인증수출자 제도는 그 요건으로 원산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대부분이 FTA 활용 수출 및 원산지 관리를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관련 교육 기관으로서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국제원산지정보원, 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센터 등이 각각 63.7%, 40.5%, 38.7%, 29.1%, 19.0%의 순으로 조사대상 기업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7] 한편 교육비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무료 교육을 받은 비중이 57%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3%는 모두 유료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유료교육의 경우 그 교육비는 '10~50만원 이하'에 응답한 기업은 19.7%, '50~100만원 이하'에 응답한 기업은 11.9%,

6) 이는 모집단이 주로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7) 이와 관련한 설문문항은 응답자들이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응답자들로 하여금 복수응답이 가능토록 하였다.

‘100～500만원 이하’에 응답한 기업은 8.8%, ‘500만원 이상’에 응답한 기업은 1.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정부의 무료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교육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FTA 활용 수출 및 원산지 관리 목적의 기업의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조사 대상기업의 45.2%로 나타났다. 이용 컨설팅 기관은 관세청이 과반수를 넘는 51.0%, 기타 기관이 21.4%, FTA 활용지원센터 10.2%, 국제원산지정보원이 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컨설팅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무료 컨설팅을 받은 비중이 7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컨설팅 비용 지출의 경우 ‘10～50만원 이하’에 응답한 기업은 8.8%, ‘50～100만원 이하’에 응답한 기업은 2.9%, ‘100～500만원 이하’에 응답한 기업은 5.4%, ‘500만원 이상’에 응답한 기업은 7.8%로 나타났다.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원 이상’에 응답한 기업은 매출액 1조 이상이 5개 업체, 1000억~1조 미만이 8개 업체, 300억~1000억 미만이 3개 업체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EU FTA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생산, 수출, 수입을 동시에 행하는 기업이 11개 업체였다.

한편 이들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의 만족도 평가에서 총 456개의 응답기업 중 긍정적인 답변이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 이상에 응답한 기업은 전체 96%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만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설문결과로부터 조사대상 기업은 대부분 FTA와 관련된 정보의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며, 대체로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및 관련 정보탐색 시간 및 비용은 이미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조사대상 기업 중 특히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부문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무료 교육 및 컨설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사전 정보탐색 비용을 낮추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원산지 관리 시스템 비용

기업의 원산지관리 시스템 기반의 구축 현황은 아래의 표에서처럼 서류관리방식, FTA-PASS 등 정부지원시스템, IT 전문기업 개발 시스템이 각각 가장 높은 57.3%, 12.0%, 8.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원산지 관리 업무기반에 대한 설문결과

구분	응답 현황		유효%	누계%
	빈도	%		
서류관리방식	262	56.5	57.3	57.3
서류와 전자문서(한글 등) 두 가지 방식	68	14.7	14.9	72.2
FTA-PASS, FTA-KOREA 등 정부지원 시스템	55	11.9	12.0	84.2
관세(회계)법인 등 시스템 활용	14	3.0	3.1	87.3
IT 전문기업 개발 시스템 활용	37	8.0	8.1	95.4
관세사 위탁 관리	6	1.3	1.3	96.7
기타	15	3.2	3.3	100.0
합계	457	98.5	100.0	
시스템 결측값 (미응답)	7	1.5		
합계	464	100.0		

자료: 저자 작성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관련하여 응답자중 정부 정책에 따른 무료시스템 활용이 가장 높은 42.3%로 나타났다. 무료 시스템 활용 외에 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비용으로는 '100만원 미만'과 '1억 이상'에 동일한 14.3%의 응답이 있었으며, 이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양극화 혹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시스템구축에 '1억 이상'이라고 응답한 27개 기업 가운데 25개 기업은 IT 전문기업의 개발 시스템이나 관세(회계)법인 등의 개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모두 300억 이상의 매출을 가지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으로, 이들 업체의 원산지 관리 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대부분이 50건 이상이다.[8] 한편 IT 전문기업의 개발시스템을 활용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은 원산지 관리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업무로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관련관리'를 꼽고 있다.[9] 이는 활용하는 협정수가 많고 취급품목이 다양한 대기업 일수록 직접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산지 관리 비용의 범위에 납품기업의 관리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과 관련한 설문에 정부의 무료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없는 경우가 44.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기적인 유료 유지보수에는 나머지 55.4%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상비 성격의 유지보수비는 '10만원 미만'에 17.7%, '50~100만원'에 12.9%, '1000만원 이상'에 5.9%의 응답이 있었다.

8)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가 50건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25개 업체 중 16개 업체이다.
9) IT 전문기업의 개발 시스템 활용 25개 업체 중 17개 업체가 이와 같이 응답.

(4) 원산지 관리 조직 인프라 비용

기업의 FTA 원산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프라 구축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의 전담 직원과 원산지 관리 전담부서의 유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아래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담당자에 대한 설문결과로는 FTA 전담직원이 발급하는 비중은 32.1%인데 반해 겸직업무자에 의한 발급은 약 62.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기업의 월평균 원산지 발급 건수가 현재까지는 '30건'이하인 기업이 79%에 달해 고유 업무량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생산 물품에 대한 정보가 일정하다면, 원산지 증명서의 기재 내용도 크게 바뀌는 부문이 없을 것이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업의 일상적인 경상업무로 정착이 가능한 부문이기도 하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기업의 일상 경상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결국 담당 직원의 지속적인 관련 업무의 숙련도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추가 비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동 설문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의 최초 발급 시 소요 업무시간을 파악해보았는데, '1주일 미만'이 68.3%, 월평균 원산지 관리에 소요되는 업무 시간은 '1주일 미만'에 76.3%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기업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초기 소요비용이 적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담당자에 대한 설문결과

구분	응답현황		유효%	누적%
	빈도	%		
FTA(혹은 수출입) 전담직원	149	32.1	32.8	32.8
겸직 업무자	284	61.2	62.6	95.4
관세사 대행	21	4.5	4.6	100.0
합계	454	97.8	100.0	
시스템 결측값 (미응답)	10	2.2		
합계	464	100.0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조사대상 기업 중 약 25.6%만이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이 53.9%, 전담부서는 없지만 여타 총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17.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담부서를 두더라도 이들 기업의 대부분(약 84%)은 기존 무역업무 담당조직에 해당업무를 추가한 형태로 새로운 조직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0] 원산지 관리부서의

업무는 해당 조직을 구심점으로 원산지관리를 위한 내부 및 외부 업무협의가 필수적인데, 이는 원산지 결정에 있어 자재관리, 생산관리 등에 대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1] 주목할 점은 기업내부의 업무협의 자체도 원산지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이와 더불어 기업 외부 협력업체의 관리를 고려할 경우 이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만큼 비용 유발효과가 클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의 35%가 기업 외부 협력업체의 원산지 발급 관련 관리에 업무상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 원산지 관리 전담부서의 생성 시점은 조사대상 기업의 57.1%(119개 기업 중 68개 기업)가 한-EU FTA를 기점으로 신설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한-EU FTA가 우리나라와 무역비중이 높은 거대경제권과의 FTA라는 상징성과 함께 인증수출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준비 차원에서 전담부서의 신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관련 비용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받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12] 일부 FTA의 경우 기업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 제도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어 FTA 활용을 위해 기업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 및 경제적인 부담에 직면해 있다.[13] 이와 관련하여 인증수출자 취득시 소요된 비용, 지정요건별 난이도, 인증수출자의 전담자교육 요건 충족, 인증수출자 전담자의 업무범위, 인증수출자 의무요건의 타 FTA 활용시 유용성 등을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인증수출자 취득시 소요된 비용

인증수출자 취득시 소요된 비용에 관한 설문의 결과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시스템 활용으로 추가 비용이 없었다'로 총 427

10) 전담부서의 신설은 16.0%를 차지하고 있다.

11) 조사 대상기업의 대부분인 98.9%가 부서간 업무 협의가 있다고 응답.

12)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면, 서류 등의 제출에 있어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의 경우, 예들 들어, 한-아세안 FTA, 한-싱가포르FTA, 한-인도 CEPA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외에 발급할 때마다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매번 제출해야 하는 수출신고필증 등 5종 이상의 첨부서류 제출, 발급기관의 심사 및 현지확인이 생략이 가능하다.

13)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의 수출시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 이상 수출에 대한 특혜관세의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6,000유로 미만의 수출의 경우 한-EU FTA 협정에서 정하는 자율발급의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

개 업체 중 190개 업체(44.5%)였다. 이는 앞서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비용과 직원 교육 및 컨설팅 수진 비용과 관련한 설문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른 무료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높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소요비용에 있어 유료로 응답한 기업 가운데, '10~50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을 지출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각각 70개 업체(16.4%), 53개 업체(12.4%), 37개 업체(8.7%)로 나타났다. 이렇듯 낮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새로이 지출된 직접비용만을 실질 비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FTA가 발효되더라도 기존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1,000만원 이상'의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기업도 소수(23개 업체, 약 5.4%)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원산지관리 소프트웨어를 IT 전문기업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원산지 시스템에 '1억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응답한 업체는 9개로,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1조 이상' 혹은 '1000억~1조 미만'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② 지정요건별 난이도

<표 3>에 정리된 것과 같이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은 크게 원산지증명 능력보유, 원산지증명 시스템 보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 및 운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 요건 가운데 충족에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439개 업체 가운데 총 245개 업체(56.3%)가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보유(원산지 소명서 등 서류구비)'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원산지증명 시스템 보유'(109개, 24.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및 운영'은 51개 업체(11.6%)가 응답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기업 차원에서 행해지는 FTA 원산지 관리 업무를 기존의 조직과 인프라,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4]

14) 기존 인적자원(겸직)의 활용비중은 62.6%, 기존 조직(업무 추가)의 활용 비중은 84% 정도로 나타난 바 있다.

<표 3> 지정요건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결과

구분	응답현황		유효%	누적%
	빈도	%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보유 (원산지소명서 등 서류 구비)	247	53.2	56.3	56.3
원산지증명 시스템 보유	109	23.5	24.8	81.1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32	6.9	7.3	88.4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및 운영	51	11.0	11.6	100.0
합계	439	94.6	100.0	
시스템 결측값 (미응답)	25	5.4		
합계	464	100.0		

③ 인증수출자의 전담자 교육 요건 충족 및 업무범위

인증수출자 지정요건 중의 하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운영에 있으며 이들 관련 전담자는 교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설문에서 '요건에 충족되는 원산지 교육만 이수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총 435개 기업 가운데 312개 업체가 선택)을 차지하였다. 이밖에 '원산지 관리사 의무 교육 및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은 108개 업체(24.8%), 관세사 등 외부전문가 지정 운영은 15개 업체(3.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증수출자 전담자 지정 운영과 관련 최소 요건만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등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인증수출자 전담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문에서 인증수출자 업무와 유관한 무역업무를 겸직(253개 업체, 58.2%)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인증수출자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업체는 9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5]

④ 인증수출자 의무요건의 타 FTA 활용시 유용성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요건 중 FTA 관련 교육 이수 및 원산지 관리사 취득 등은 해당 기업이 한-EU FTA 외에 여타 FTA 활용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FTA 관련 교육 이수 및 원산지 관리사 취득을 통해 얻게 된 정보는 여타 FTA 활용시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15) 다만 그 대상을 넓혀 모든 업체에 대한 앞서 설문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업무를 FTA 전담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는 응답기업의 약 32.8%인 149개 업체로 조사되었고, 겸직업무자의 비율이 62.6%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유용성 설문에 대하여 실제 긍정적인 응답을 한 기업('그러하다' 및 '매우 그러하다'로 응답한 업체가 각각 148개, 20개)보다는 중간적 입장('보통'에 응답한 업체가 229개)을 취한 업체가 더욱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양한 FTA의 활용을 위해 각각의 협정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기업 담당자에게 일정부문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2) 이행비용

(1) 의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이행비용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기업이 FTA 활용단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부담의 정도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른 업무의 복잡성 등이 원산지관리를 위한 이행비용 측정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게 마련이다.

먼저 원산지 관련 직·간접 업무부담의 정도는 원산지 증명서의 월평균 발급건수 및 소요시간, 원산지증명서(확인서)의 최초 발급시 소요 업무시간, 원산지 관리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원산지증명 방식이 다양한데, 수출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물품에 대해 FTA별 서로 다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원산지관리 업무의 복잡성에 따른 비용요소 증가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에 대한 현황 조사, 자율발급방식 및 기관발급의 어려움, 선호하는 원산지증명방식, 다양한 원산지 증명 방식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혼잡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업무 과중도 등을 조사해 보았다.

(2) 원산지 관련 직·간접 업무부담의 정도

① 원산지 증명서의 월평균 발급건수 및 소요시간

조사대상 기업의 월평균 원산지증명서(확인서)의 발급건수에 대해서는 452개 업체 중 '5건 이하', '6~10건 이하', '11~30건 이하' 발급에 응답하는 비중은 각 49.8%, 16.4%, 12.8%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응답기업의 약 79%가 월평균 30건 이하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건 이하'로 발급하는 225개 기업 가운데 205개는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의 기업이며, 이중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업은 170개로 대체로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건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서류관리를 포함한 월평균 소요 업무 시간에 대한

설문과 관련하여 '1~5시간', '1시간 미만', '6~10시간'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데, 각각 139개(30.8%), 66개(14.6%), 53개(11.8%) 업체가 응답한 결과이다. 즉, 전체 응답기업(451개) 가운데 약 57%에 달하는 업체가 10시간 미만을 원산지 관리 업무에 투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원산지증명서(확인서)의 최초 발급시 소요 업무시간

원산지 증명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해당 FTA 특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세번), 원산지 결정기준 등 증명서식 기재 내용에 대한 파악에 상당 부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부품을 납품받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납품 관련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업무도 동 소요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명요건을 갖추어 최초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행정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볼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확인서)의 최초 발급시 소요된 업무시간에 관한 설문에서 아래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1~5 시간'으로 응답한 업체가 109개로, 전체 응답기업 451개 가운데 약 24.2%로 가장 높다. 한편 '2주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43개로 전체 응답기업의 9.5%에 그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원산지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문으로 '협력업체의 원산지발급관련 관리'를 들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협력업체의 원산지발급 관련 관리'에 소요되는 부문을 업무 애로 사항으로 인식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데, 특히 최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있어 협력업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원산지증명서(확인서) 최초 발급시 소요 업무시간에 대한 설문결과

구분	응답현황		유효%	누적%
	빈도	%		
1시간 미만	74	15.9	16.4	16.4
1~5시간	109	23.5	24.2	40.6
6~10시간	15	3.2	3.3	43.9
11~24시간	11	2.4	2.4	46.3
1~2일	59	12.7	13.1	59.4
1주일	40	8.6	8.9	68.3
1~2주 이내	30	6.5	6.7	74.9
2주 이상	43	9.3	9.5	84.5
잘 모르겠다.	54	11.6	12.0	96.5
기타	16	3.4	3.5	100.0
합계	451	97.2	100.0	
시스템 결측값 (미응답)	13	2.8		
합계	464	100.0		

자료: 저자 작성

③ 원산지관리 업무 관련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

원산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에 대한 설문에는 총 464개 업체가 응답하였는데,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기재내용 파악을 선택한 업체가 165개로 전체 3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리가 33.5%(151개 업체), 원산지증명서 서류 관리가 20.4%(92개 업체)의 순으로 높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설문에 응답한 업체의 대부분이 원산지 관리 기초 교육 및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TA 특혜관세 신청 단계에서 원산지서식의 기재내용 및 전문용어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원산지관리 업무 관련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에 대한 설문결과

구분	응답현황		유효	누적
	빈도	%	%	%
원산지증명서 서식 기재 내용 파악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등)	165	35.6	36.6	36.6
원산지증명서 서류 관리	92	19.8	20.4	57.0
원산지관리 업무관련 부서 간 협의	30	6.5	6.7	63.6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관련관리	151	32.5	33.5	97.1
기타	13	2.8	2.9	100.0
합계	451	97.2	100.0	
시스템 결측값	13	2.8		
합계	464	100.0		

자료: 저자 작성

(3) 원산지증명 방식의 상이함에 따른 영향

① 원산지증명 방식에 따른 애로 사항

먼저 조사대상 기업에 자율발급방식을 이용할 경우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에 전체 373개 응답기업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152개 기업이 '비교적 간단해서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기재사항 중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기 어렵다'와 '정형화된 양식이 없어 혼란스럽다'로 응답한 업체가 각각 131개(35.1%), 80개(21.4%)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발급방식에 가장 큰 장점일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관발급방식을 이행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 질의에는 기관발급을 이행

하는 263개 업체 가운데 91개 업체만이 응답하였는데, '기재 내용에 대한 세관 당국 유출 우려'에 대한 응답비중이 약 33%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상대국에서 FTA 혜택에 대해 무지하다', '관세환급물품으로 사실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 없다' 및 '상대국에서 원산지 증명서로부터 발생하는 관세혜택이 별로 없어 요청이 미미하다' 등에 대한 응답이 각각 27.5%(25개 업체), 26.4%(24개 업체), 7.7%(5개 업체)를 차지하고 있다.

② 복수 증명서발급 방식의 적용에 따른 혼잡도

다수의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FTA별로 증명방식이 다름에 따라 하나 이상의 원산지증명 방식을 이행함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는 실제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방식 모두 이용하고 있는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중 173개 업체가 응답하였는데, 56.5%에 달하는 98개 업체가 FTA 활용에 혼잡성과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출기업과 생산기업에 여러 FTA를 활용시 협정별 새로운 원산지증명방식의 도입으로 실제 담당자에게 발생되는 원산지 증명 업무 가중의 증가 정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율 및 기관 발급을 모두 이용하는 수출기업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7개 업체(42.5%)가 FTA별 상이한 증명방식으로 인해 이를 습득하는데 기존에 활용한 FTA와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74개 업체(40.9%)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새로운 원산지증명방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기존에 FTA를 활용한 경험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후관리비용 및 비용대비 효과

(1) 의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후관리비용은 FTA 활용이후 단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FTA 활용 이후에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비용의 지출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기업의 서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원산지 증명서 작성에 따른 관련 서류와 보관방법, 서류 관리의 소요 업무시간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한편 기업의 FTA 비용 대비 효과는 기업이 FTA의 특혜관세 효과를 보기 위해 원산지 관리를 위해 투입된 추가비용에 대하여 얻게 되는 수출증가 여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FTA로 인한 유발비용의 수출액 대비 비중과 FTA 특혜수출로 발생한 추가 매출 등에 대한 설문에 기초하고 있다.

(2) 사후관리비용

①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서류관리 시행여부

FTA 특혜관세 신청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이후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서류관리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16]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 453개 기업 가운데 268개 업체로 약 59.2%에 달한다. 이와 반면에 '아직 미시행하고 있으나 계획 중'으로 응답한 업체는 135개로 응답기업의 29.8%이며, 이러한 계획조차도 없는 기업이 50개로 약 11%[17] 에 이른다.

한편 본 설문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약 90%에 달하는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또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해보면, 이들 중 원산지검증에 실제 대비하고 있는 업체가 약 60%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특혜 원산지 혜택의 합법성을 다루는 사후검증에 대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②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따른 서류와 보관방법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에 대해 복수응답을 요구하는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설문에 응답한 기업은 총 453개 기업으로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보인 서류는 자재명세서이며, 전체 응답자의 78.1%가 동 자료를 원산지 관리의 주요 서류로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구매원장은 265개 업체(58.5%), 가공공정자료는 213개 업체(47.0%), 원재료수불부는 212개 업체(46.8%)가 응답하였다.[18] 이상의 설문 결과는 향후 원산지 관리를 위한 서류 보관 가이드 등 정책수립 시 기업에게 우선순위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 서류목록이다.

원산지 관련 서류 보관 방법과 관련된 설문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차지한 보관 방식은 서류보관 방식으로 총 452개 기업 중 199개 업체(44%)가 이에 응답하였다. 그 뒤를 잇는 보관방식은 서류와 전자보관 병행, 스캔 문서로 전자 보관, 원산지관리 시스템 보관이 있었으며 이들 각각의 응답 업체 및 비중은 155개 업체

16) 사후검증 관련 서류의 관리는 원산지증빙 관련 직접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서류도 포함된다.
17) 이들 50개 기업 가운데 39곳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한다'고 응답한 기업에 해당한다.
18) 이 외에 기타서류로 송장, 원산지확인서, 선적서류, 물류비 명세서, 증명서발급대장, 위험물 검사 증명서, 전략물자 수출 허가서 등이 있었다.

(34.3%), 43개 업체(9.5%), 41개 업체(9.1%)였다. 이러한 설문 결과로 기업의 원산지 관련 서류 보관 방식은 아직까지는 담당자가 직접 관련 문건을 보관하는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87.8%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앞서 원산지증명서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에 관한 설문에서 '원산지 증명서 서류관리'에 응답한 기업은 92개 업체였다. 이들의 원산지 서류보관 방식은 '서류보관' 40개 기업, '스캔문서 보관' 10개 기업, '서류와 전자보관 병행' 34개 기업 등이었다. 이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 관련 하여 '서류관리에 업무 소요시간이 많다'고 응답한 업무 담당자의 대다수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아닌 '수기식 서류보관방식'에 대한 업무 애로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정부지원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동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위주의 시스템 구축여부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③ 서류관리 소요 업무시간 및 서류관리의 애로사항

원산지 관련 서류관리에 소요되는 월평균 업무시간에 대한 설문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은 답변은 '1시간~5시간'으로 총 451개 기업 중 139개 기업(30.8%)이 여기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1시간 미만', '6~10시간'에 각각 66개 기업(14.6%), 53개 업체(11.8%)이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57.2%가 10시간미만(월 1일)을 원산지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원산지 증빙서류관리 업무와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부문은 '서류의 체계적 관리 부재'로서 143개 업체(31.7%)였다. 그 뒤를 이어 '서류 분류 및 보관'이 106개 업체(23.8%)가, '장기적 서류의 증가에 따른 자료분실'에 73개 업체(16.2%)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결과에서 얻는 시사점은 기업 원산지 증빙 서류관리 업무에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원산지 관련 서류의 체계적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매뉴얼 내지 시스템 제공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 주요 내용에는 BOM 등 중요 서류를 중심으로 서류 분류에 대한 일차적인 숙지, 서류 관리법, 장기적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비용대비 효과

① FTA로 인한 소요비용의 수출액 대비 비중

FTA로 인한 소요비용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동 비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전체 수출액의 '0.1~0.5%'미만으로 총 430개 업체 중 227개 업체(52.8%)가 이에 응답하였다.[19] 다

음으로 ‘0.5~1%미만’에 55개 업체(12.8%)가 응답, ‘1~2% 미만’에 39개 업체(9.1%)가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74.7%의 기업이 무역비용을 전체 수출액의 ‘2%미만’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 수출액의 ‘7% 이상’에 응답한 기업은 누적수치로 41개 업체(9.6%)였다.

② FTA 특혜수출로 추가로 발생된 매출

기업이 인식하는 FTA 체결에 따른 무역 효과, 즉 FTA 특혜수출로 추가 발생된 매출에 대한 정량 분석 차원에서 동 추가 매출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전체 수출액의 ‘1~2%’미만으로 총 425개 업체 중 205개 업체(48.2%)가 응답하였다. 그 뒤를 잇는 것은 ‘2~5%미만’에 67개 업체(15.8%)가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72.9%의 기업이 FTA로 인한 무역 효과를 전체 수출액의 5% 미만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매출액이 감소하였다’에 응답한 업체는 38개 업체(8.9%)로 나타났다.

상기의 설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그들이 지출한 FTA 무역 비용보다는 추가적으로 발생된 수출이 더욱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이상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지불하는 무역비용을 FTA 활용이전단계, 활용단계, 활용이후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원산지 관련 관리비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보고 주요 이슈별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현황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업의 FTA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먼저 FTA 활용이전단계의 소요비용과 관련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및 컨설팅 비용과 관련하여 기업은 주로 정부의 무료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 정부가 의도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19) FTA로 인한 실제소요 비용에 대한 설문의 결과에서 가장 높은 응답은 ‘원산지 관련 교육비 및 컨설팅 비용’에 전체 435개 업체 중 125개 업체(28.7%)였다. 이어 ‘원산지서류관리비용’에 83개 업체(19.1%), ‘원산지관리시스템비용’에 69개 업체(15.9%), ‘원산지관리 인건비’에 60개 업체(13.8%),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협력사 관리비용’에 38개 업체(8.7%),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탐색비용’에 37개 업체(8.5%), ‘FTA 특혜수출을 위한 정보탐색 비용’에 12개 업체(2.8%), ‘FTA 활용에 따른 수입선 변화’에 11개 업체(2.5%)가 응답하였다.

평가된다. 이렇듯 상당수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 활용의 첫 걸음은 무료 교육 및 컨설팅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다 내실 있는 기업 밀착형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기업이 정부의 무료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구축비와 유지보수에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비용절감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 기업중 과반수 이상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 관리에 있어 아직도 서류관리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 및 비용에 있어 많은 애로점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보급형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FTA-PASS의 사업지속과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개발 및 환경 개선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증수출자 취득과 관련하여 기업은 정부의 무료교육 및 컨설팅, 시스템 지원에 힘입어 상당한 비중의 업체들이 추가 비용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많은 비용 지불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그 지정요건의 충족, 특히 교육요건 충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필요 요건의 범위 내에서만 충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비용소요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기존의 인적 및 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인증수출자 취득에 국한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증수출자의 지정이 여타 FTA 활용에 있어 여러 방면에서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행정비용 내지 부담의 일부로 인식하는 부분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인증수출자가 단순히 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의무화 하는 최소 가이드라인 정도가 아닌 보편화된, 그리고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바람직한 원산지관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단계에서의 소요비용과 관련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기업은 원산지 서식 기재내용 파악과 FTA 전문 내용 파악 및 협력업체 관리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정부의 무료교육 및 컨설팅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부정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바, 현행 정부의 무료교육 및 컨설팅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협력업체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한 정부지원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둘째, 원산증명서 발급방식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기업은 자율 및 기관 등 복수 발급방식의 동시 사용에 따른 혼란과 업무가중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수의 FTA가 체결되고 각 FTA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선택함에 따른 문제로 사료되는 바, 추후 체결되는 FTA의 원산지관리 관련 규정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FTA 활용이후단계에서 사후관리 비용과 관련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기업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특히 최근 EU, EFTA 등으로부터 간접검증 요청의 증가와 미국으로부터의 직접검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정부 차원의 기업의 사후검증 대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둘째, 원산지증명서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와 원산지 관련 서류 보관 방법에 대해 상당수의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 서류관리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며, 수기식 서류보관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정부지원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긍정적인 비용절감 효과에 반하는 문제로 지적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에 부합하는 서류의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송경은 외, FTA 적합형 원산지관리를 위한 업종별 FTA 무역비용 분석, 국제원산지정보원, 2013.

Anson, J., O. Cadot, A. Estevadeordal, J. de Melo, A. Suwa-Eisenmann, and B. Tumurchudur., “Rules of Origin in North-South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 an Application to NAFTA”,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3, 2005.

Cadot, O., J. de Melo, and B. Tumurchudur.,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in EU and US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An Assessment”, *World Trade Review*, 2006.

Carrere, C. and J. de Melo., “Are Different Rules of Origin Equally Costly?: Evidence from NAFTA”, *CEPR Working Paper*, 2004.

Estevadeordal, A.,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No. 34, 2000.

Falvey, R. and G. Reed., “Economic Effects of Rules of Origin”, *Weltwirtshaftliches Archiv* Vol. 134, 1998.

Holmes, P, and G. Shephard., “Protectionism in the Economic Community”, International Economics Study Group 8th Annual Conference, 1983.

Ju, J. and K. Krishna., “Firm Behaviour and Market Access in a Free Trade Area with Rules of Origi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28, 2005.

Koskinen, M., “Excess Documentation Costs as a Non-tariff Trade Measur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ort Effects of Documentation Costs”, Swedish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Working Papers, 1983.

Krishna, K. and A. O. Krueger., “Implementing Free Trade Agreement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in Deardoff and Stern (ed.),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5.

Krueger, A. O., “Free Trade Agreements as Protectionist Devices: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 No. 4352., 1993.

Rosellon, P.L., “The Economics of Rules of Origin”,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Vol. 9, 2000.

ABSTRACT

The Analysis on Managing Costs of Rules of Origin by Korean Companies in their Application of FTAs

Mee-Jin CHO · Byung-Mun LEE · Kyoung-Eun SONG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trade costs of domestic firms utilizing the FTAs in terms of burden of expenses in managing the rules of origin. In doing so, we classify the managing costs of FTA rules of origin into three categories (that is, (i) ex ante costs from acquiring necessary information and building the infrastructure in the advance stage before the FTAs, (ii) the actual costs of the origin management in the application stage of FTA preferential treatment, (iii) ex post management cost in the preparation stage of origin verification) and perform a survey on the greater details on each category. Using the comprehensive results from the survey regarding domestic firm's use of FTA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issues related to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nd addresses the concerns involved with their managing costs of FTA rules of origin. Importantly,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supports to reduce inefficiency induced by the additional costs that domestic firms face in their use of FTAs and proposes the variou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managing costs of rules of origin.

Keywords : FTAs, Rules of Origin, Trade Costs, Domestic Firms' Utilization of FTAs, Managing Costs of Rules of Origin